

2016학년도 대전외국어고등학교(전기) 신입생 입학전형 요약

I 모집 과 및 모집 정원 : 남·여 250명 (10학급, 학급당 25명)

전형구분		과 (학급수)							계 (10)
		영어과 (2)	독일어과 (1)	프랑스어과 (2)	스페인어과 (1)	중국어과 (2)	일본어과 (1)	러시아어과 (1)	
정원내	일반전형	40	20	40	20	40	20	20	200
	사회통합전형	10	5	10	5	10	5	5	50
	계	50	25	50	25	50	25	25	250
정원외	국가유공자전형	1	1	1	1	1	1	1	7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정원의 2% 이내							5

-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은 총 정원의 **20% 이상**으로 하되,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50%**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에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선발
- ※ 정원 외 국가유공자 전형에 응시하는 지원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는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II 지원 방법

1. 지망과 : 7개 과 중 1개 과만 지원
 -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중 1개 과 지원
2. 전형 유형 : 4개 전형유형 중 1개 유형에만 지원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국가유공자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중 1개 유형에 지원

III 지원 자격

1. 공통자격 : 다음 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전광역시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다음 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전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자
 - 1) 국내 중학교 졸업자
 - 2)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또는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 3)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①항 제2~7호 해당자)

2. 전형 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

전형구분	인원	지 원 자 격																																																									
일반 전형	200	<p>◆ III. 지원자격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한 자</p>																																																									
	50	<p>◆ III. 지원자격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기회균등(경제적배려대상자)</p> <p>1) 법정 대상자</p>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 2에 따른 교육급여대상자 또는 그 자녀</p> <p>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은 가)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2015.7.1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p> <p>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차상위계층 범위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 아동수당)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우선 돌봄 차상위 등)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표1> 2015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가구원수</th> <th rowspan="2">소득기준(원)</th> <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th> </tr> <tr> <th>직장가입자(원)</th> <th>지역가입자(원)</th> <th>혼합(원)</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781,168.5</td><td>24,280</td><td>3,571</td><td>24,944</td></tr> <tr><td>2인</td><td>1,330,098.0</td><td>40,515</td><td>18,324</td><td>41,017</td></tr> <tr><td>3인</td><td>1,720,682.0</td><td>52,333</td><td>32,803</td><td>52,957</td></tr> <tr><td>4인</td><td>2,111,266.5</td><td>64,080</td><td>52,026</td><td>64,956</td></tr> <tr><td>5인</td><td>2,501,851.0</td><td>75,980</td><td>72,579</td><td>76,843</td></tr> <tr><td>6인</td><td>2,892,435.0</td><td>88,430</td><td>88,962</td><td>89,521</td></tr> <tr><td>7인</td><td>3,283,019.5</td><td>99,769</td><td>105,472</td><td>100,852</td></tr> <tr><td>8인</td><td>3,673,604.0</td><td>112,221</td><td>122,708</td><td>113,621</td></tr> <tr><td>9인</td><td>4,064,188.5</td><td>124,384</td><td>137,773</td><td>126,158</td></tr> <tr><td>10인</td><td>4,454,773.0</td><td>135,442</td><td>149,772</td><td>137,248</td></tr> </tbody> </table> <p>※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이 '15.7.1.인바, '15.7.1.이후 시행하는 사회 통합전형에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p> </div>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정원내	사회통합전형																																																										

전형구분	인원	지 원 자 격																																																																									
사회통합전형	50	<p>2) 비법정 대상자</p> <p>가)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p> <p>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저소득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신용 불량, 또는 가족의 장기 질환 등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학교 내에 학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추천한 학생 <p style="text-align: center;">【차차상위계층 범위 예시】</p> <p>○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표2> 2015년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가구원수</th> <th rowspan="2">소득기준(원)</th> <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 </tr> <tr> <th>직장가입자(원)</th> <th>지역가입자(원)</th> <th>혼합(원)</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926,000</td><td>28,462</td><td>6,730</td><td>29,371</td></tr> <tr><td>2인</td><td>1,577,000</td><td>48,368</td><td>26,859</td><td>48,560</td></tr> <tr><td>3인</td><td>2,040,000</td><td>62,201</td><td>48,941</td><td>62,970</td></tr> <tr><td>4인</td><td>2,502,000</td><td>75,980</td><td>72,579</td><td>76,843</td></tr> <tr><td>5인</td><td>2,965,000</td><td>90,671</td><td>91,873</td><td>91,062</td></tr> <tr><td>6인</td><td>3,428,000</td><td>104,450</td><td>112,143</td><td>105,783</td></tr> <tr><td>7인</td><td>3,891,000</td><td>118,139</td><td>130,183</td><td>119,751</td></tr> <tr><td>8인</td><td>4,354,000</td><td>133,489</td><td>147,619</td><td>135,442</td></tr> <tr><td>9인</td><td>4,817,000</td><td>147,705</td><td>162,840</td><td>149,834</td></tr> <tr><td>10인</td><td>5,280,000</td><td>161,683</td><td>177,862</td><td>164,396</td></tr> </tbody> </table> <p>※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p>나. 사회다양성(비경제적배려대상자) : <u>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로 지원 제한</u></p> <p>○ 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은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표 3>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표3> 2015년 사회다양성 전형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소득분위</th> <th rowspan="2">연소득 환산액</th> <th rowspan="2">월 소득 평균</th> <th colspan="3">건강보험료 납입금</th> </tr> <tr> <th>직장가입자</th> <th>지역가입자</th> <th>혼합</th> </tr> </thead> <tbody> <tr> <td>8분 위</td> <td>71,543,571</td> <td>5,961,964</td> <td>182,127</td> <td>199,987</td> <td>185,538</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소득분위	연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분 위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소득분위	연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분 위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전형구분	인원	지 원 자 격												
사회 통합 전형	50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5호에 따른 자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호~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7) 소년·소녀 가장 8) 조손가족의 자녀 9) 순직 군경·순직 소방관·순직 교직원의 자녀 10)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중 1명 11) 장애인(1~3급 중증장애)의 자녀 12) 입양 자녀 13)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14) 경찰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15)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16) 환경미화원의 자녀 17) 우편집배원의 자녀 ※ ‘기회균등’이면서 ‘사회다양성’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												
국가 유공자 전형	7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대상자로 인정한 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자)												
정원 외	5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제2호 및 3호 해당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 colspan="2">자 격 요 건</th> </tr> </thead> <tbody> <tr> <td>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td> <td>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td> <td rowspan="4">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한 자)</td> </tr> <tr> <td>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td> <td>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td> </tr> <tr> <td>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td> <td>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td> </tr> <tr> <td>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td> <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td> </tr> </tbody> </table>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한 자)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한 자)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한 자)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IV 전형 방법

※ 일반전형·사회통합전형·국가유공자전형·특례입학대상자전형 모두 적용

총점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단계 (1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1) 1단계 전형점수 순으로 과별 모집정원의 2배수 선발 2) 1단계 전형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내신성적(3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출결점수 순으로 1단계 합격자 선발 -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출결점수는 다음 페이지의 “출결상황 산출방식” 참조
2단계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1) 면접(40점) = 자기주도학습영역(30점) + 인성영역(10점) 2)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정원의 100% 선발 3) 전형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총점이 동점인 경우 : 면접점수 > 1단계 전형점수 순 - 면접점수가 동점인 경우 : 자기주도학습영역 > 인성영역 순 - 1단계 점수가 동점인 경우 : 영어내신성적 (3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출결점수 순으로 최종 선발 -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u>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를 기회균등 대상자로 우선 선발 후 2) 기회균등 대상자 탈락자와 사회다양성 대상자 중 성적 순으로 선발 ※ <u>특례입학대상자전형의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과별 1명씩 우선 선발 후 2) 전체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 5명을 선발함

V 성적 산출방식

※ 일반전형·사회통합전형·국가유공자전형·특례입학대상자전형 모두 적용

1. 1단계 :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구 분	내 용
학기별 내신 성적 반영 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4개 학기(2-1, 2-2, 3-1, 3-2) 영어 환산점수의 합으로 한다. (환산 점수는 <표4>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과 「<표5> 중3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방식」에 의하며, 학년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음)</p> </div> <p>가. 졸업예정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으로 반영 (중간고사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는 해당 중학교의 결정에 따름)

구 분	내 용
학기별 내신 성적 반영 방법	<p>-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해당과목 등급을 해당 중학교 학교장이 발급할 수 있어야 함</p> <p>- 결석(질병, 사고, 기타) 등의 사유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중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 반드시 중학교에서 성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p> <p>나. 졸업자의 경우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반영</p>
내신 성적 산출 방식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 특정학기 영어내신성적 또는 전(全)학년의 영어내신성적이 없는 경우 1단계 성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한다.</p> </div> <p>가.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년 1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p>나. 2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p>다.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p>라. 3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p>마. 2학년 1·2학기과 3학년 1·2학기 영어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학년(1학년) 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 직전 학년 영어 성적으로 대체 - 직전 학기(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 영어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p>바. <u>중학교 전(全)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합격 처리 후 2단계 면접점수(40점) × 5로 최종 선발 <p>※ 단, 1단계 합격자(모집정원의 2배수)의 정원 외로 선발</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ackground-color: #e0e0ff;"> <p>고등학교입학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1단계 성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한다.</p> </div> <p>6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의 총점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산출</p> $160 \times \frac{\text{총점}}{600}$
출결 상황 산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 = 무단결석 일수 × 0.4점 감점 ※ 단, 무단결석 1일에 0.4점씩 감점하되, 최대 감점한도는 4점으로 한다. • 무단결과/무단조퇴/무단지각 3회를 무단결석 1회로 처리 • 출결상황 산출 기준일 : 원서접수 시작 전일 기준(2015.10.27. 마감)

<표4>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수)	B(우)	C(미)	D(양)	E(가)
부여 점수	5	4	3	2	1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성취도 수준의 ()는 졸업생의 경우임

<표5> 중3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방식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기준 (석차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환산점수	40.0	38.4	35.6	30.8	24.0	16.0	9.2	4.4	1.6

● 등급별 학생 수 산정방식

- 이수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 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이수자수 96명인 경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누적인원	3.84	10.56	22.08	38.40	57.60	73.92	85.44	92.16	96
반올림값	4	11	22	38	58	74	85	92	96
등급인원	4	7	11	16	20	16	11	7	4

- A 학생이 25등 했을 경우, 위 표에서 22등까지가 3등급이고 38등까지가 4등급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4등급임

●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frac{(\text{동석차인원수} - 1)}{2}$

<예시 : 이수자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이수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frac{(\text{동석차인원수} - 1)}{2} = 1 + \frac{(7 - 1)}{2} = 4$

- 중간석차백분율 = $\frac{4}{96} \times 100 = 4.17(\%)$

-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인 학생은 없게 된다.

2. 2단계 : 면접(40점)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으로 최종 선발

가. 평가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제출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능력을 확인

나. 평가 방법 : 복수의 입학전형위원(입학전형위원, 전공어입학전형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위촉전형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주요 내용

전형 요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요 내용
자기주도학습 영역 (30점)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및 전공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동기 •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자기주도 학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인성 영역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 위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유사도 검증 시스템 활용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대리작성, 허위작성, 또는 표절 시에는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기재 시 영점 처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기준에 따라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평가 항목 : 자기주도학습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의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 HSK ·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점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봉사활동 기본 기준 시수 : 중학교 각 학년 20시간 씩 총 60시간
- 검정고시 합격자 : 20시간 (인정기간 : 2015.01.01 ~ 2015.10.27)

VI 전형 일정 및 제출 서류

1. 전형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특례입학대상자 자격심사 (증빙 서류 지참) 	10.20.(화) 09:00 ~ 10.23.(금)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학홍보부(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인터넷) 접수 	10.28.(수) 09:00 ~ 10.30.(금)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접수 • 1단계 전형료 : 8,000원 (인터넷접수 수수료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서류 제출 - 전형유형별 관련 서류 제출 	11.02.(월) 14:00 ~ 16:00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강당(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합격자 발표 (2단계 면접대상자) 	11.06.(금) 15:00	각 중학교 fax 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합격자(2단계 면접대상자) : 자기소개서 · 교사추천서 입력 	11.06.(금) 15:00 ~ 11.13.(금) 16:00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홈페이지 • 2단계 전형료 : 17,000원 (인터넷접수 수수료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11.27.(금) 08:00~	대전외국어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합격자 발표 	12.04.(금) 15:00	각 중학교 fax 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소집 	12.14.(월) 14:00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등록 	2016. 1월 중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나. 원서접수 방법

- 1)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지원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에는 전형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원서접수 전 증빙서류를 가지고 본교 입학홍보부에 방문하여 지원자격의 해당여부를 심사 받아 지원
- 2)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인터넷 접수가 완료 됨 (인터넷접수 수수료 별도)
- 3) 접수 된 이후 전형유형 및 과 변경 불가
- 4) 입학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출결, 영어 내신 성적란은 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쳐 날인 후 투명 테이프로 봉인하여 1단계 서류 제출 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 5) **학교생활기록부(Ⅱ)**는 외국어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양식(수상경력- 4번, 교과 학습발달상황- 7번은 삭제)에 맞춰 단면 출력하여 원본 대조필 후 학교장 직인·날인 및 간인 후 각 페이지마다 오른쪽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1단계 서류 제출 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 6) **영어등급확인서도** 출력하여 원본 대조필과 학교장 직인·날인 후 성적란은 투명 테이프로 봉인하고 오른쪽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1단계 서류 제출 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 7) 1단계 합격자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인터넷에 입력
- 8) 1단계 합격자의 **교사추천서**는 1명의 지원자에 대해 1명의 교사(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 - 과목 무관)가 모든 항목을 작성

2. 제출 서류

가. 공통 (일반전형·사회통합전형·국가유공자전형·특례입학대상자전형)

구 분	제 출 서 류
1단계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 사진 3cm x 4cm (인터넷 접수 시 입학원서에 업로드하여 출력) 2)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3) 학교생활기록부Ⅱ 4부(원본 1부 + 복사본 3부)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4) 영어등급확인서 1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성적까지) ※ 모든 제출 서류의 우측 상단에 원서 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 기재 ※ 사회통합전형·국가유공자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 ※ III. 1. <u>공통자격 '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u> (10월 20일 이후 발급 분)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기준일 : 2015.10.27.(화)**

나. 사회통합전형

※ 인터넷 원서접수 후에는 지방 전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원서접수 전 증빙서류를 가지고 본교에 방문하여 지원자격의 해당여부를 심사 받아 자격별 지원 유형에 맞게 지원

구 분	제 출 서 류
사회통합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 사회통합 확인서 1부(해당중학교장 확인,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학부모 확인서 1부(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기 회 균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우선돌봄 차상위 등) 1부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9개월간(2015.1~2015.9)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차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9개월간(2015.1~2015.9)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학교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추천서 1부(해당중학교장 확인,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 1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건강보험료영수증 - 채권압류통지서 - 폐업확인서 - 법원파산 결정문 사본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 병원 진단서 등 <p>※ 학교장 추천자는 사회통합 확인서 제외</p>
사 회 다 양 성	사회다양성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9개월간(2015.1~2015.9)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사 회 다 양 성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귀화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 해당 증빙서류 1부 - 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등
	순직 군경 · 순직 소방관 순직 교직원의 자녀	• 순직증명서 1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사회통합대상자 '다자녀가정자녀' 유형 학부모 확인서 1부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 1부
	입양 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 자녀(1~3급 중증장애)	• 장애인증명서 1부
	15년 이상 재직 중인 - 군인(준·부사관 이하) - 소방공무원(지방소방장 이하) - 경찰공무원(경사 이하)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환경미화원 · 우편집배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다. 기타(1단계)

구 분	제 출 서 류
특례입학대상자 (인터넷 원서접수 전 증빙서류를 가지고 본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자격의 해당여부를 심사 받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특례입학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u> (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입학관련자료실 참고) • <u>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u> -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하고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은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u>출입국사실증명서(지원자, 부, 모) 각 1부</u> • <u>전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u> • <u>해외거주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 모) 각 1부</u>

구 분	제 출 서 류
고입검정고시 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제시)</u> • <u>봉사활동확인서 및 독서포트폴리오</u>
국가유공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외국 중학교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하고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은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전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

※ 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모든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1단계 합격자(2단계 면접대상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 완료(온라인 결재가 되어야만 최종 제출이 이루어짐)

VII 기타 사항

1. 2016학년도 다른 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는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본교 지원자도 2016학년도 다른 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2. 본교 전형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경우 2016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 전형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5. 지원자는 수시로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의 안내에 따른다.
6.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합격자 예비 소집 때 자세하게 안내한다.
7.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학년도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전형업무 관리지침』 및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8.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주소] 302-818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9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학홍보부
[전화번호] (042) 530-8050, 8051, 8025 [팩스번호] (042) 537-0686

2015년 7월

대전외국어고등학교장